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오루강침(주) 전기공이 휴게시간에 2층 휴게실 난간에서 추락하여 상병명 “1) 뇌좌상, 2) 후두부 열상, 3) 좌견갑골절, 4) 좌주관절부열상”으로 요양을 신청한 경우

(89-451호 89. 12. 22.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박 ○ ○

주소 : 부산직할시 북구 감천 2동

원처분청 :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 ○ 오루강침주식회사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9. 7. 1.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 ○ 오루강침 주식회사 소속 전기공으로서 1989. 6. 17. 10:05경 동사 2층 휴게실과 제 4 공장 2층으로 통하는 통로 난간에서 추락,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상병명 “뇌좌상, 후두부 열상, 좌견갑골절, 좌주관절부 열상”의 부상을 입고 원처분청에 요양신청을 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휴식시간에 2층 휴게실과 제 4공장 2층으로 통하는 통로 난간에 앉아 있는 동료 근로자 김○○의 옆에 앉아 있다가 동인의 우측 어깨에 청구인의 오른팔을 갖다대는 순간 동인이 중심을 잃고 상체가 난간 밖으로 젖혀지면서 두사람이 동시에 추락했다는 사실로 보아 이는 시설물 하자에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적행위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재해발생당시는 휴게시간으로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재

해발생장소는 50센치미터 정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위험이 상존한데도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전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9. 11. 17. 박○○)
2. 원처분청 의견서(1989. 11.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9. 9. 8. 심사관 오○○)
4. 요양신청서 사본(1989. 6. 19. 박○○)
5.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1989. 6. 30. 행정서기 박○○)
6. 문답서 사본(박○○, 권○○, 이○○, 권○○)
7. 근로계약서 사본(박○○ 분)
8.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오루강침 주식회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6. 17. 사업장내에서 추락 사고로 피재되어 요양중인 자로서 원처분청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청구인은 재해당일 10:00부터 - 10:10까지 휴게시간에 모타공장 2층 휴게실과 제 4공장 2층을 연결하는 통로(지상 4미터, 폭 1.5미터, 길이 3미터)의 난간(높이 60-70센티미터, 폭 13센티미터)에 걸터앉아 있는 동료 근로자 김○○의 옆에 앉으면서 김○○의 어깨에 팔을 얹는 순간 중심을 잃은 김○○과 같이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로서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정된다.

둘째 : 사업장에는 약 100여명의 휴게실에 탁구대 5대, 응접 6개, 자동판매기 1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재직근로자 300여명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다.

세째 : 재해발생 장소는 모타공장 2층 휴게실과 제 4공장 2층을 연결하는 통로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주가 휴식장소로 제공한 휴게실 외의 장소에서 임의휴식을 취하다 발생한 재해로 인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 판단하면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충분한 휴식시설이 제공되어 있는데도 통로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청구인의 임의행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는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의 결함에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

